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교안전사고 관련 면책 및 지원과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74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시 면책 등	3
2.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교육감의 지원 근거 마련 등	7
3.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11
※ 참고자료: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태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5. 27.

3. 회 부 일 : 2026. 5.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원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련활동·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과 같은 학교 밖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안전조치의무의 기준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이 부당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과도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학교 밖 교육활동의 기획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중한 행정 업무가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청에서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일선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교원 및 보조인력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소송 등 분쟁에 직면할 경우 교육청에서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1.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시 면책 등(안 제10조제5항)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 현장 안전점검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 ④ (생략)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u>보조인력</u> 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u>안전조치의무를 다한</u>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 ----- <u>보조인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등”이라 한다)</u> ----- ----- ----- ----- <u>사전 안전교육, 현장 안전점검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한</u> ----- ----- -----.

나. 검토의견

-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전사고관리 지침은 사고 및 위급상황 발생 시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으로 기능하고, 해당 지침에 따라 사후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됨¹⁾.

안전사고관리 지침은 사고 유형을 ①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 ② 병원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 ③ 생명위급사고(응급환자)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상황파악 및 전파, 안전조치, 상황정리, 보고조치(사고통지) 순서에 따른 대응절차를 규정하고 있음²⁾. 다만, 동 지침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절차에 한정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 사고 발생 이전의 예방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사전 예방조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학교안전사고 예

1) 학교안전법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상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참조

방에 어려움이 있으며, 교직원의 민·형사상 면책범위 또한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안전조치에 한정되어 사전 예방조치는 면책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 안전교육, 현장 안전점검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 이전의 예방조치를 면책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보임.

□ 기존 안전사고관리 지침이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적 조치 중심으로 규율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사전 예방조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경우³⁾ 사고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면책의 범위에 사전 예방조치를 포함함으로써, 교직원 등이 정당한 예방조치를 다한 경우 사고 발생 시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향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사전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서 점검·확인해야 할 사항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교직원 등의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예방조치 기준이 교육활동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교직원 등의 책임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데 적절한 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수 있음.

3) 개정안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 안전교육, 현장 안전점검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한 경우를 면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안전사고 발생 이전에 이루어지는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지침을 마련할 때 교육활동의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방조치 기준을 정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준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교직원 등의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학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예방조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 의견]

○ 교육부

- 사전 안전교육, 현장 안전점검 등 일부 안전조치만을 열거하는 경우 모든 교육활동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포괄하지 못하거나 면책 여부에 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현행 안전사고관리 지침은 사고 발생 이후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사전 안전교육·현장 안전점검 등과 현행 제10조제3항이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학교장등”의 약칭이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을 모두 포함하는지 불명확함.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시·도교육청 및 학교(교사)

- 학생의 돌발 행동 등 교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면책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장관이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한 경우 면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원의 전문 범위를 벗어난 현장 안전점검은 시설 관리 주체의 책임으로 명확히 하거나 관련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사전 안전교육·현장 안전점검을 면책요건으로 구체화할 경우 오히려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과도한 입증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2.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교육감의 지원 근거 마련 등(안 제10조 제6항~제8항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을 상대로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안전사고관리 지침 준수에 따른 면책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에게 법률 및 심리 상담, 소송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 ④ (생략)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⑥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학교장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고발 또는 민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5항에 따른 면책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u>
<u><신설></u>	<u>⑦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등에게 법률 및 심리 상담, 소송 지원</u>

<신 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방법·절차 및 제7항에 따른 지원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검토의견

-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및 인솔교사 등의 책임 부담이 지적되고 있음.⁴⁾
-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의 면책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법률 및 심리 상담, 소송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

4)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교육부, 2026. 5. 28.

- 강원도 체험학습 안전사고의 1심 판결('25.2) 이후, 안전사고 발생 및 책임 부담으로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축소되는 경향

■ 시도교육청 수련회 및 수학여행 실시 현황 (충북제외)

- [전체] '23.63.2%→'24.65.7%→'25.62.2%, [초등] '23.53.3%→'24.57.2%→'25.48.1%
- '25년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7.7%), 경기(9.7%), 인천(13.6%), 대전(4.0%)의 실시율이 매우 낮은 상황

■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강원도 소재 OO초(6학년) 학생이 버스 하차 후,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22.11월)
- 담임교사 1심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 2심 금고 6개월(선고유예), 보조교사 무죄

- 현장체험학습 축소는 '학생 교육기회 제한' 및 '학교 구성원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시급
- ※ '현장학습' 두고 교사-학부모 갈등 증폭.."교사가 봉이냐" 반발(MBC, '24.5.24.)

써 학교안전사고 발생 이후의 법적 분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분쟁에 대한 대응 부담을 완화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특히,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소송 및 이와 관련된 절차 진행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법률 및 심리 상담, 소송 지원 등을 통해 관련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법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에 따른 법률 및 심리 상담, 소송 지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인력 등까지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으나, 교원에 대해서는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른 지원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감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⁵⁾,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

5) 교원지위법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원, 손해배상금 지원,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이 포함된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⁶⁾,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교원에 대한 지원 범위 및 기존 지원제도와와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교육감의 면책 의견 제출이 실제 분쟁 대응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면책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의 적용에 따라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바, 교육감의 의견 제출은 면책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정이나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을 직접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한 교육부 의견]

○ 교육부

- 면책 의견 제출의 전제가 되는 제10조제5항의 면책 범위 및 적용대상이 불명확한 경우 법적 해석의 혼란 및 제도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됨
- 교직원에 대한 법률지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안전법」의 취지와 관련성이 낮음
- 「교원지위법」 제21조에 따른 교육활동 관련 분쟁 시 법률지원 제도와 중복되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른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6) 교원지위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3.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10조의5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생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원센터의 업무로 ① 학교 밖 교육활동 운영 관련 컨설팅 및 매뉴얼 작성 지원, ② 보조인력 명부 작성·관리,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③ 사전답사 지원 및 안전점검 자문, ④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사고 발생 시 분쟁조정, 법률 및 심리 상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5(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교육활동 운영 관

	<u>련 컨설팅 및 매뉴얼 작성 지원</u> <u>2. 보조인력 명부 작성·관리,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에 대한 교육·연수</u> <u>3. 사전답사 지원 및 안전점검 자문</u> <u>4.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사고 발생 시 분쟁조정, 법률 및 심리 상담 등 지원</u> <u>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u> <u>③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 학교 밖 교육활동에 있어 인솔교사는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문성 및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인력 제도⁷⁾가 도입되었음.

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보조인력은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답사하는 등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⁸⁾, 인솔교사가 계약, 보조인력 배치, 안전점검, 사후 정산 등 교육활동의 준비·운영 전 과정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은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보임⁹⁾.
- 이에 개정안은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안전을 제고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며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를 때,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가 안전점검 자문과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등을 실시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여 학생의 안전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운영 컨설팅, 보조인력 관리 및 사전답사 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교육활동의 준비·운영 과정에서 인솔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한편, 현재 시·도교육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도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¹⁰⁾, 개정안이

8) 참고로, 일부 시·도 및 학교급(중·고등학교)에 따라 학급당 1명이 아닌 학생 50명당 1명이 배치되고 있어 교육현장에서는 충분한 보조인원의 배치를 요청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5월 28일에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통해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음.

9) 현장체험학습의 기획부터 계약, 사전답사, 안전관리 및 사후 정산까지 준비·운영 전 과정의 업무를 교사가 전담하고 있어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2026. 5. 28.).

10) 시·도별로 현장체험학습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컨설팅, 사전답사, 정보제공 등 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음.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버스 임차, 보조인력 배치, 체험처 연계 및 계약 체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학교지원단을 통해 권역별 전세버스 계약업무 및 안전요원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2026. 5. 28.).

입법화될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기존 지원조직을 활용·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 의견]

○ 교육부 - 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별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시·도교육청 - (대구) 「학교안전법」 제10조의4에 따라 시도 조례 등으로 교육감에게 체험 학습 학생안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현장답사, 안전교육, 보조인력의 역할·자격·배치기준, 지도·감독 등 현장체험학습에서의 학생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 등으로 인한 혼란 야기로 인한 삭제 필요 - (강원) 임의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으로 지원 강화 필요

문 의 처
02)6788-5186

교육부 고시 제2025-19호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0조제3항에 따라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사고 유형”은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와 병원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 생명위급사고(응급환자)를 말한다.
2. “안전사고 대응절차”란 상황파악·전파, 안전조치, 상황정리, 보고조치(사고통지)를 말한다.

제3조(안전사고 유형별 대응절차) ①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상황파악·전파: 최초발견자는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
2. 안전조치: 교직원은 간단한 처치를 시행한다.
3. 상황정리: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4. 보고조치(사고통지):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② 병원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상황파악·전파: 최초발견자는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
2. 안전조치: 교직원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를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단, 보호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직원이 동행하여 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으며, 동행한 교직원은 이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3. 상황정리: 학교장은 환자 이송 및 보호자 인계 상황을 파악하고, 병원에 동행한 교직원은 의사 판단에 따라 피해자 스스로 귀가 또는 보호자에게 인계 후 복귀한다.

4. 보고조치(사고통지): 학교장은 교육(지원)청 보고 및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하고 학생들에게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③ 생명위급사고로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상황파악·전파: 최초발견자는 즉시 119 신고 후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

2. 안전조치: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119구조대가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 동행한 교직원은 학교장, 보호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

3. 상황정리: 병원 이송에 동행한 교직원은 이송 상황 및 치료 경과를 학교장과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 후 복귀한다.

4. 보고조치(사고통지): 학교장은 교육(지원)청 보고 및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하고 학생들에게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④ 각 항의 대응절차 중 1호와 2호는 현장 상황에 따라 순서를 달리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4조(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